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법 (해관총서령 제284호)

제1장 총칙

제1조 진출입 화장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진출입 상품검험법》 및 그 시행조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및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등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진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이하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해관이 실시하는 검험검역 진출경 상품 목록에 열거된 것.

관련 국제조약,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관이 검험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것.

제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진출입 화장품에 대해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해관은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진출입 상품검험법》이 규정한 합격평가 절차에 의거하여 진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험을 실시한다.

제4조 진출입 화장품의 생산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과 자율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해관은 현대 과학기술의 응용을 강화하여 진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의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한다.

제2장 수입 화장품 검험검역

제6조 수입 화장품의 수하인(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 화장품은 법에 따라 특수 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 화장품 등록(비안)을 완료해야 하며, 해관은 전자 데이터 자동 대조를 통해 이를 검증·확인한다.

제7조 해관은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험을 실시한다. 중국이 아직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를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관총서가 지정한 해외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검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수입 화장품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목적지에서 검험을 실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무역 편의와 수입 검험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타 장소를 지정하여 검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해관은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해 현장 검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실험실 검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채취 증빙을 발급한 후, 검험기관에 송부하여 검험을 실시한다.

검험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따라 검험을 실시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라벨에 대한 검증·확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 수입 화장품이 검험에 합격한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검험증명을 발급한다.

수입 화장품이 해관 검험 결과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해관은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한다. 그 외의 항목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관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험을 거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관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한다.

제12조 수입업자는 수입 화장품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은 진실하고 완전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록의 보존 기한은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록 보존 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수입 화장품의 등록 또는 비안용 샘플, 기업의 검사·연구개발 및 홍보용 비시용(非試用) 샘플은 신고 시 샘플의 사용 및 처리 상황 설명서, 비매품(비판매용) 사용 약약서 및 해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이 합리적인 사용 범위 내인 경우 해관은 검험을 면제한다. 수입업자는 화장품의 유통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 보존 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외국 주재 중국 외교영사기관 및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국제기구 주중 대표기관이 공무용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화장품은 검험을 면제한다. 필요한 경우 해관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수입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제3장 수출 화장품 검험검역

제16조 수출 화장품은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입국(지역)에 관련 표준이 없고 계약상 요구사항도 없는 경우에는 해관총서가 관련 표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수출 화장품 생산기업은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속적이고 유효하게 운영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출 화장품은 생산지에서 검험을 실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무역 편의와 수출 검험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타 장소를 지정하여 검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 생산기업, 발하인(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에 따라 해관에 검험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해관이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출 화장품에 대해 현장 검험, 실험실 검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1조 발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장품을 수출할 때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관은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수출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22조 수출 화장품이 해관 검험에 합격한 경우 수출을 허가한다. 수입국(지역)이 검험증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관은 검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 화장품이 해관 검험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관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험을 거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전량 재수출하는 화장품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재수출하려는 예정 국가(지역)의 법령 또는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중국 표준에 따른 검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공 후의 제품은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 요구사항에 따라 검험을 실시한다.

제24조 국내에서 전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수출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 화장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5조 해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관의 검험을 받아야 하는 진출입 화장품 외의 진출입 화장품에 대해,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무작위 샘플링 검험(추차검험)을 실시한다.

제26조 해관은 진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대해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진출입 화장품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조직·수립하고 실시한다.

제27조 진출입 화장품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내외에서 화장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진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은 리스크 평가 결론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험 항목의 추가, 검험 빈도의 상향 조정

리스크 경보 발령 또는 관련 부처 통보

수입 잠정 중단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조치

진출입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심각한 리스크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총서는 직접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출입 화장품의 리스크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해관은 리스크 대응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진출입 화장품에 안전 문제가 존재하여 인체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출입 화장품의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즉시 해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수하인, 수출 화장품의 생산기업 및 발하인에 대해 신용 관리를 실시하고 분류 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30조 수입 화장품의 수하인, 수출 화장품의 생산기업 또는 발하인이 해관의 검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출입 상품 재검험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험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재검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검험 결과 미생물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제품의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해 재검험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제5장 법적 책임

제31조 수입 화장품 수하인이 반송, 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관은 경고 또는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 진출입 화장품의 생산경영자에게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3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화장품 및 전시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화장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4조 진출입 비누(향조)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 화장품 효능이 있다고 표방(선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진출입 치약, 화장품 반제품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해관은 수입 단계에서 화장품 반제품의 등록 또는 비안 검증·확인을 면제하고, 라벨 검증·확인을 면제한다.

제35조 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이란 바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적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 제품을 말한다.

"화장품 반제품"이란 마지막 공정인 '충진(원액을 용기에 담는 것)' 또는 '분장(나누어 담는 것)' 공정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생산 가공 공정을 완료한 제품을 말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가 해석 책임을 진다.

제37조 본 방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8월 10일 구 국가질량지질검험검역총국령 제143호로 공포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 2018년 5월 29일 해관총서령 제240호,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기존 《진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284号）
发布时间：2026-05-08

（2026年5月6日海关总署令第284号公布 自2026年12月1日起施行）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进出口化妆品安全监管，保障消费者健康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化妆品监督管理条例》和《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下列进出口化妆品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

- （一）列入海关实施检验检疫的进出境商品目录的；
- （二）有关国际条约、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实施检验检疫的。

第三条 海关依法对进出口化妆品实施检验检疫和监督管理。

海关按照风险管理原则，依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规定的合格评定程序对进出口化妆品实施检验。

第四条 进出口化妆品的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相关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加强管理，诚信自律，保证化妆品安全。

第五条 海关加强现代科学技术应用，提升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和监督管理的信息化、数字化、智能化水平。

第二章 进口化妆品检验检疫

第六条 进口化妆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依法向海关如实申报，并随附相关材料。

进口化妆品应当依法完成特殊化妆品注册或者普通化妆品备案，海关通过电子数据自动比对进行验核。

第七条 海关根据我国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对进口化妆品实施检验。

我国尚未制定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的，可以参照海关总署指定的国外有关标准进行检验。

第八条 进口化妆品应当在收货人或者其代理人申报的目的地实施检验。海关总署根据便利贸易和进口检验工作的需要，可以指定在其他地点检验。

第九条 海关根据监督管理需要，可以对进口化妆品实施现场检验。需要进行实验室检验的，按照规定抽样，并出具抽样凭证，送检验机构进行检验。

检验机构应当依法取得相应资质认定，按照要求实施检验并在规定时间内出具报告。

第十条 海关依法对进口化妆品标签实施验核，具体要求由海关总署另行规定。

第十一条 进口化妆品经检验合格的，海关依法出具检验证明。

进口化妆品经海关检验不合格，涉及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的，由海关责令销毁或者退运；其他项目不合格的，可以在海关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符合要求的，方可销售、使用；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经技术处理仍不合格的，由海关责令销毁或者退运。

第十二条 进口商应当如实记录进口化妆品的信息，记录应当真实、完整，保证可追溯。

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产品使用期限届满后一年；产品使用期限不足一年的，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二年。

第十三条 进口化妆品注册或者备案用样品，企业检测、研发和宣传用的非试用样品，申报时应当提供样品的使用和处置情况说明、非销售使用承诺书以及海关要求的其他材料，数量在合理使用范围的，海关免于检验。进口商应当如实记录化妆品流向，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二年。

第十四条 外国驻华外交领事机构以及享受外交特权和豁免的国际组织驻华代表机构按照公务用品申报进口的化妆品，免于检验。必要时，海关可以实施查验。

第十五条 境外发生疫情疫病可能影响进口化妆品安全的，海关依法对进口化妆品实施检疫。

第三章 出口化妆品检验检疫

第十六条 出口化妆品应当符合进口国（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进口国（地区）无相关标准且合同未有要求的，可以由海关总署指定相关标准。

第十七条 出口化妆品生产企业应当建立质量管理体系，并保证持续有效运行。

第十八条 出口化妆品应当在生产地实施检验。海关总署根据便利贸易和出口检验工作的需要，可以指定在其他地点检验。

第十九条 化妆品出口前，生产企业、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依法向海关申请检验，并随附相关材料。

第二十条 海关根据监督管理需要对出口化妆品实施现场检验、实验室检验的，按照本办法第九条规定执行。

第二十一条 发货人或者其代理人出口化妆品时应当依法向海关如实申报，并随附相关材料。

海关根据监督管理需要，依法对出口化妆品实施查验。

第二十二条 出口化妆品经海关检验合格的，准予出口。进口国（地区）对检验证书有要求的，海关应当出具检验证书。

出口化妆品经海关检验不合格，可以在海关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符合要求的，方准出口；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经技术处理仍不合格的，不准出口。

第二十三条 来料加工全部复出口的化妆品，来料进口时，能够提供符合拟复出口国（地区）法规或者标准的证明性文件的，可以免于按照我国标准进行检验；加工后的产品，按照进口国（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进行检验。

第二十四条 境内发生疫情疫病可能影响出口化妆品安全的，海关依法对出口化妆品实施检疫。

第四章 监督管理

第二十五条 海关对本办法规定必须经海关检验的进出口化妆品以外的进出口化妆品，根据国家规定实施抽查检验。

第二十六条 海关对进出口化妆品安全实施风险监测，组织制定和实施进出口化妆品安全风险监测计划。

第二十七条 进出口化妆品发生安全问题，或者境内外发生化妆品安全问题可能影响到进出口化妆品安全的，海关根据风险评估结论，可以依法采取以下与风险水平相适应的处置措施：

- （一）增加检验的项目、上调检验的频次；
- （二）发布风险预警或者向相关部门通报；
- （三）暂停进口；
- （四）海关总署规定的其他措施。

进出口化妆品对人体健康构成或者可能构成严重风险时，海关总署可以直接采取必要的紧急处置措施。

进出口化妆品风险水平发生变化的，海关可以调整风险处置措施。

第二十八条 进出口化妆品存在安全问题，可能或者已经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进出口化妆品的生产经营者应当依法采取相应措施并立即向海关报告。

第二十九条 海关依法对进口化妆品的收货人、出口化妆品的生产企业和发货人实施信用管理并采取分类管理措施。

第三十条 进口化妆品的收货人、出口化妆品的生产企业或者发货人对海关的检验结果有异议的，可以按照进出口商品复验相关规定申请复验。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不受理复验申请：

- （一）检验结果显示微生物指标超标的；
- （二）产品超过使用期限的；
- （三）其他原因导致无法实现复验的。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一条 进口化妆品收货人不履行退运、销毁义务的，由海关处以警告或者一万元以下罚款。

第三十二条 进出口化妆品的生产经营者有其他违法行为的，按照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三十三条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化妆品和以展品申报进口化妆品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按照有关规定执行。

第三十四条 进出口香皂不适用本办法，但是宣称具有特殊化妆品功效的除外。

进出口牙膏、化妆品半成品参照本办法管理。海关在进口环节免于化妆品半成品的注册或者备案验核、免于标签验核。

第三十五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一）化妆品，是指以涂擦、喷洒或者其他类似方法，施用于皮肤、毛发、指甲、口唇等人体表面，以清洁、保护、美化、修饰为目的的日用化学工业产品。

（二）化妆品半成品，是指除最后一道“灌装”或者“分装”工序外，已完成其他全部生产加工工序的产品。

第三十六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七条 本办法自2026年12月1日起施行。2011年8月10日原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43号公布，根据2018年4月28日海关总署令第238号、2018年5月29日海关总署令第240号、2018年11月23日海关总署令第243号修改的《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同时废止。